

91.2.3

“교사 연차·생리수당 지급”

서부지원 판결 방학으로 휴가대체 위법

사립학교 교사에게 방학기간과 별도로 연·월차와 생리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휴가를 못 가면 재단이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

서울지법 서부지원 오천석 판사는 2일 해직교사 최금숙(34·여) 씨가 학교법인 선일학원(이사장 김정희)을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에서 “선일학원은 87년 6월부터 89년 7월까지의 연·월차 휴가 수당을 통상임금 1백% 수준으로 계산한 89만6천8백75원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89년 3월

이후의 생리휴가 수당 7만1천9백52원을 최씨에게 지급하라”고 판결했다.

최씨는 지난 80년부터 선일여중·고 교사로 근무하다 89년 8월 면직된 뒤 지난해 5월 “근무기간 중 받지 못한 연·월차휴가 수당과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해달라”며 소송을 냈었다.

현재 사립학교는 물론 공립학교에서도 교사들은 1년에 2차례 방학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연·월차와 생리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당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

고 있다.

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전국 20여만 사립학교 교사가 방학기간과 별도로 연·월차 휴가를 보장받게 된다.